

이 보도자료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  
부산지청

공보담당관 자장겸사 이노국

전화 (032)320-4302 / 팩스 (032)320-4488



검찰  
PROSECUTION SERVICE

보도자료  
2018. 2. 5.(월)

자료문의 :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실

전화번호 : (032)320-4330

주책임자 : 부장검사 신현성

## 제목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사범 수사결과

- 인천지검 부산지청(지청장 이형택)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신종 환치기 범행을 적발하여 환치기 사범 6명을 인지하고, 2명을 구속 기소, 3명을 불구속 기소, 1명을 기소중지한 바 있음(2017. 11. 1.자 보도자료 참조)
- 이후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(세관장 노석환)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,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2년 동안 1,3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환치기 사범 1명 등 2명을 추가 적발하여 구속 기소하였음

‘환치기’란 정식 은행에서의 환전이 아닌, 국내에서 환전상에게 돈을 주고, 국외에서 외국환으로 지급받거나, 그 반대의 방법으로 외국환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불법 환전을 의미함

- 피고인들은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아 중국 등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국내로 전송하고,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받은 대금을 환전수취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치기를 하였음
- 본건 수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,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을 엄단하고,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하는 국부 유출을 차단하였음
- 앞으로도 부산지청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임

## 1 사건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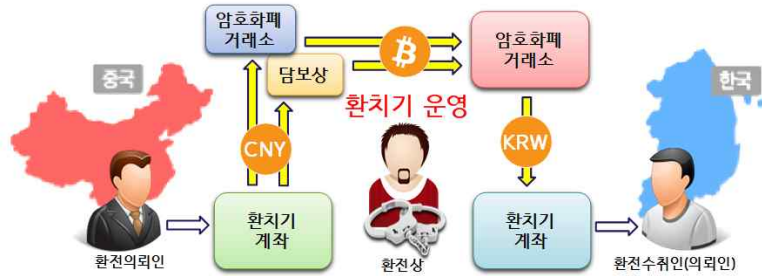
### 1.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A○○(35세, 환전상)
  - 2016. 1.~2017. 12.까지 10여개의 타인 통장들을 이용하여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고, 중국 등지에서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한 후,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판매한 대금을 환전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**합계 400억 원 상당을 환전하여**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**【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】**
- B○○(31세, 중국인, 환전상)
  - 2016. 1.~2018. 1.까지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고, 중국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한 후,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판매한 대금을 환전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**합계 1,319억 원 상당을 환전하여**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**【외국환거래법위반】**

### 2. 범행 개요

-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범행
  - ① 중국 또는 국내에서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
  - ② 피고인이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담보상으로부터 비트코인 매입
  - ③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지갑으로 전송
  - ④ 비트코인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
  - ⑤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, 인출하여 전달

[ 암호화폐 이용 환치기 거래도 ]



● **국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국내 유입 경로**

-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2017. 9.경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이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일명 '담보상'을 통해 비트코인을 음성적으로 매수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음

● **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불법이동 및 자금세탁**

-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에서 환치기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중국에서 위안화로 전달하거나, 비트코인을 중국 '담보상'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불법이동하고 자금을 세탁하였음
- ※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 중

**2 수사 경과**

- '17. 8. 30. 구속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수사 중 환치기 범행 확인
- '17. 10. 甲○○ 등 2명 구속 기소, 乙○○ 등 3명 불구속 기소, 1명 기소중지
- ※ '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행 적발' 보도자료 배포('17. 11. 1.)
- '17. 12. 10. 비트코인 거래소(빗썸 코리아) 추가 압수수색
-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환치기에 사용되는 계좌 추적

- '18. 1. 8. A○○ 체포 및 환전소 압수수색 / 1. 11. 구속영장 발부
- '18. 1. 16. B○○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/ 1. 18. 구속영장 발부
- '18. 1. 26. A○○ 구속 기소 / 1. 31. B○○ 구속 기소

**3 수사 의의**

- **관세청과의 공조수사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범 엄단**
  -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, 해외 밀수 대금을 반출하거나,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신종 환치기 범행을 엄단하여 외환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, 범죄수익 불법이동 및 자금세탁 차단에 기여
- **중국 '담보상'을 통한 음성적 비트코인 거래 차단**
  - '담보상'과 연계하여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환치기 사범을 단속하여 음성적인 비트코인 거래를 적발하였음
  - ※ 담보상은 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자들로서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이후 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기 위하여 생겨났고,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추적에 한계가 있음
- **'김치 프리미엄'을 통한 국부유출 차단**
  - 중국에서 채굴한 대량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국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행을 단속함으로써 국부유출 차단

## 4

###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부친지청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,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이다